

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건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2월 23일  
발 의 자 : 신건택·우미경·남창진·김제리  
박성숙·김진수·성중기·이명희  
송재형·황준환·강감창·박중화  
이복근·이숙자·주찬식·박양숙  
맹진영·김진철·김현아 의원(19명)

## 1. 제안이유

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,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확대함(안 제2조).
- 나.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을 강화해 명예시민의 공신력을 강화함(안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2.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</p> <p>2.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</p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신 건 택